

천년을 열어나가는  
신명나는 전주 유아교육

# 목차

- I 2023년 전주유아교육 실천 방향 \_ 04
- II 2022년 전주유아교육 추진 성과 \_ 05
- III 2023년 핵심과제별 주요 사업 \_ 08

## 제1장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 \_ 09

- 1-1.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_ 10
- 1-2.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 \_ 14
- 1-3. 유·보 및 유·초 이음교육 \_ 15
- 1-4. 소규모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_ 17
- 1-5. 혁신유치원 운영 \_ 18
- 1-6. 유치원 기관평가 운영 \_ 19
- 1-7. 방과후 과정 운영 \_ 20
- 1-8.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_ 22
- 1-9. 돌봄교실 운영 지원 \_ 25

## 제2장 현장 지원 열린 행정 \_ 29

- 2-1. 유치원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_ 30
- 2-2. 유치원 장학 \_ 31
- 2-3.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 등 지원 \_ 33
- 2-4.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 \_ 37
- 2-5.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등 표창 \_ 38

## 제3장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교육환경 \_ 39

- 3-1. 유치원정보공시제도 정착 \_ 40
- 3-2.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 \_ 42
- 3-3.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지원 \_ 43
- 3-4. 행복안심유치원 운영 지원 \_ 44
- 3-5. 유아 성교육 내실화 교육 \_ 45
- 3-6. 유치원 보건환경 개선 \_ 47
- 3-7. 유치원 급식안전 강화 \_ 48
- 3-8.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 \_ 50
- 3-9.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_ 51
- 3-10.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_ 52
- 3-11.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 \_ 53

## 제4장 공정과 상생교육 \_ 55

- 4-1. 유아학비 지원 \_ 56
- 4-2. 다문화가정 유아 등에 대한 지원 \_ 58
- 4-3.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_ 59
- 4-4.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_ 61
- 4-5.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_ 63
- 4-6.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_ 65
- 4-7. 「쓰담쓰담 유아마음동행」 유아의 성장과 발달 지원 \_ 66
- 4-8. 유치원 학급당 정원 적정화 \_ 67

## 부록 교직원 의무연수 안내 \_ 68

# I 2023년 전주유아교육 실천 방향

## 교육비전

천년을 열어가는 신명나는 전주유아교육

## 추진 방향

- 유아·놀이중심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의 성장과 발달 도모
- 공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유치원·학부모·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교육공동체 협력문화 조성



## II 2022년 전주유아교육 추진 성과

### 1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사업명	주요 성과	발전 방향
교원역량강화 지원으로 전문성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교원 성장 연수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한 교사와 유아를 위한 인권감수성 연수: 3회, 150명</li> <li>- 책을 찾아서 떠나는 도서관 여행 연수: 5회, 280명</li> <li>-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책놀이 체험: 26개원</li> <li>- 미래교육 역량 강화 연수: 2회, 103명</li> <li>- 지속가능한 환경생태 연수: 2회, 120명</li> </ul> </li> <li><b>나래교사 성장지원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래교사 성장을 위한 배움길 연수: 8회</li> <li>- 나래교사 성장 지원단 운영: 8회</li> </ul> </li> <li><b>소통과 나눔의 컨설팅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중심 컨설팅장학 지원: 70회</li> <li>- 교원의 자율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li> </ul> </li> </ul>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교원 실행력 강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유아와 함께 행복한 학부모 연수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한 부모되기, 유아 마음읽기: 2회, 60명</li> </ul> </li> <li><b>미래형 유치원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형 거점 유치원(2개원: 초록빛, 하버드)</li> <li>-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2개원: 성심, 자연아이숲)</li> </ul> </li> <li><b>실내누리놀이터 조성 지원</b> (공립 6개원, 사립 7개원, 총13개원)</li> <li><b>자율선택과제 운영 지원</b> (공립 36개원, 사립 57개원, 총93개원)</li> <li><b>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유치원 운영(3개원: 전주온샘, 전주새뜰, 전주성현)</li> <li>- 수업혁신학년 운영(1개원: 전주아름)</li> <li>- 책임있는 교실 운영 (3개원: 전주아름, 전주온샘, 전주효천초병설)</li> </ul> </li> </ul>	교육과정 질적 심화 및 수업 혁신 지원

<p><b>방과후 과정 지원체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b> - 방과후 과정 운영: 109개원</li> <li>● <b>방과후 과정 지도·점검</b> - 교육지원청별 지도·점검 실시: 35개원</li> <li>● <b>공립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혼합급식 개선비 지원(51개원)</b></li> </ul>	<p>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p>
<p><b>돌봄교실 운영 지원체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돌봄교실 운영 지원</b> - 온종일 돌봄: 2개원(공립 1개원, 사립 1개원) - 저녁 돌봄: 12개원(사립 12개원) -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 42학급(공립 10학급, 사립 32학급)</li> <li>● <b>돌봄교실 컨설팅: 56개원</b></li> </ul>	<p>돌봄교실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p>
<p><b>사립유치원 방과후 인력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립유치원 방과후 인력지원: 113명</b> -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 지원: 800천원×113명×12개월</li> </ul>	
<p><b>사립유치원 교사 근무 여건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433명</b> - 담임수당 등: 3,680백만원 - 단기대체 강사비: 39백만원</li> </ul>	<p>사립유치원 교원 복지 규정 마련</p>

**2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사업명	주요 성과	발전 방향
<p><b>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발전 유공자 및 기관 교육부장관 표창: 2명</li> <li>●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교육감 표창: 9명</li> <li>●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교육장 표창: 20명</li> </ul>	
<p><b>교육실습협력 유치원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실습협력유치원 지정·운영: 17개원</b> - 가산점 인정 교원: 17개원(86건)</li> </ul>	<p>교육실습협력 유치원 운영</p>
<p><b>배움과 성장의 동아리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립유치원 교원 자율학습동아리: 17개팀</b></li> <li>● <b>공·사립유치원 교원 수업동아리: 14개팀</b></li> </ul>	

## 3 유아교육 기회 및 기반 구축

사업명	주요 성과	발전 방향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공립 100천원, 사립 280천원</li> <li>- 방과후 과정: 공립 50천원, 사립 70천원</li> <li>- 계: 공립: 150천원, 사립: 350천원</li> </ul> </li> </ul>	유아학비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관할청과 공동 지도·감독
사립유치원 정보시스템 접속환경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유치원 스쿨넷 도입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유치원 58개원 지원, 원당 월 327천원</li> <li>-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및 K-에듀파인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인터넷 접속환경 조성</li> </ul> </li> </ul>	유아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 4 유치원 운영 적정화

사업명	주요 성과	발전 방향
유치원 기관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 기관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 공·사립유치원 전체(109개원)</li> <li>- 평가방법: 자체평가 후 교육지원청 평가단 검토</li> <li>* 교육공동체 중심 자체평가로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과정 성찰 기회 확대 및 현장 부담 경감</li> </ul> </li> </ul>	유치원 자치에 의한 자체평가 성실 이행
행복안전유치원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안전유치원 운영: 59개원 (공립 21개원, 사립 38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별 사업비 및 운영비 7,500천원 지원</li> </ul> </li> </ul>	



III

2023년  
핵심과제별  
주요사업

## 제1장

#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

- 1-1.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 1-2.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
- 1-3. 유·보 및 유·초 이음교육
- 1-4. 소규모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 1-5. 혁신유치원 운영
- 1-6. 유치원 기관평가 운영
- 1-7. 방과후 과정 운영
- 1-8.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1-9. 돌봄교실 운영 지원



### ● 추진 목적

- 놀이가 배움이 되는 교육활동 운영
- 유아 주도의 놀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본질 회복
- 교육과정 운영 시간 준수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 2023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전북교육 2023-141)
- 202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교육부)

### ● 추진 내용

- 유치원의 자율성에 기반한 유치원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 새학년도 교육과정 세움주간 운영
  - 교육과정 운영 시간 1일 4~5시간 준수
    - ※ 교육활동 시작 시간: 오전 9시 기준(전·후 30분 조정 가능)
  -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 운영 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1일 2시간 이상\*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

\*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놀이시간을 2시간 이상 확보하되, 날씨와 계절, 유치원 상황, 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

- 관련 법령 및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 반영
  - ※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영역 및 내용(안전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생태감수성, 인성·인권감수성, 문화감수성 등)
- 놀이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교육과정 내 특성화프로그램 금지(미준수 시 행정지도 및 조치 강화)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 놀이를 지원하는 놀이 공간 조성
  - 실내 놀이중심 공간 조성(교실, 활동실, 복도 등 활용)
  - 생태 놀이 공간 조성(생태놀이터, 산책길, 흙산 등 비구조화된 놀이 공간 조성)
  - 학부모 놀이 나눔터 조성(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학부모 소통·공유 공간 조성)

● 운영 시 강조점

<p><b>유아의 유능함과 주도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아의 유능함은 타고난 것이며,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점점 성장함</li> <li>▶ 유아가 놀이에서 세상과 소통하려는 능동성과 주도성은 배움의 잠재적인 힘이며, 유아를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임</li> </ul>
<p><b>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는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음</li> <li>▶ 교사는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무엇인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실천해야 함</li> <li>▶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유아가 놀이하며 배운다는 가치를 믿고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과정을 유아와 함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함</li> <li>▶ 책무성이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 및 실천 의미</li> <li>▶ 교사의 책무성은 놀이 속에 녹아 있는 배움과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읽어내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li> <li>▶ 미리 계획한 계획안에 기반한 실행과 평가 보다는 지속적인 놀이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필요</li> </ul>

● 교사의 역할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기
- 함께 배우며 성장하기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해하고  
실천하기**

- ▶ 하루일과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놀이를 중심으로 일과를 편성
  - 일과에서 놀이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유아의 흥미와 무관한 활동을 교사가 계획해서 실시하지 않도록 함
  - 유아 및 놀이 중심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되, 유아가 주도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으로 진행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 ▶ 유아를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서 교사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해가는 공동 구성자로 인정
  - 유아가 놀이를 통해 경험하는 것, 스스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
  -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
    - 정서적 지원(미소, 공감의 표정, 칭찬과 격려의 말)
    - 언어적 지원(질문이나 제안 등의 상호작용)
    - 환경적 지원(공간 구성을 바꾸어주거나 새로운 자료 제공)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기**

- ▶ 교사가 선계획하여 ‘계획-실행-평가-계획’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선형적 과정보다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다가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음
  - 유아의 배움을 잘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주목
  - 틀에 맞춘 과도한 문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형식과 분량에 있어 유치원별·학급별로 자율성 부여
  - 단편적인 놀이 에피소드나 활동보다는 전개된 놀이와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누적된 기록을 총체적으로 고려

**함께 배우며  
성장하기**

- ▶ 유아 주도적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교사의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
  - 교사는 자신과 유아의 역량을 신뢰하고, 유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급 문화 만들어야 함
  - 학습공동체를 통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 조성

## ● 중점 추진 사항

###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모든 유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유아가 주도하여 이끌어 가는 놀이가 배움이 되는 교육여건 지원
  -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 정착
  - 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 일상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또래 간 상호작용과 놀이 중심의 교육활동 운영
  -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통합적으로 발달하도록 지원
  - 유아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지원

### ● 국가·사회적 요구 반영

-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교육 실천[생태감수성]
  -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 실천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교육 실시
  - 실천하는 지구사랑 환경사랑(가정에서, 유치원에서, 혼자서, 다함께) 교육 전개
  -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생활화하는 환경교육 실시
- 유치원 인권·인성·안전교육 실시[인성·인권감수성]
  - 7대 학교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에 반영 및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교육부 개발 자료 및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활용
- 다문화가정 유아 등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문화감수성]
  - 다름에 대한 존중, 문화 이해 교육, 언어교육, 학부모 교육, 교원 교육 등

### ● 학부모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

- 유아 발달 단계 및 유아교육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학부모 지원 자료 안내
  -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방,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집콕! 놀이콕!, 누리과정 포털(i-nuri)
- 전라북도교육청 2023 학부모교육 운영계획에 따른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활용 및 참여 안내
- 교육기부, 모니터링단 및 동아리 운영, 지역사회 인프라 교육활동에 활용

## ● 기대 효과

- 유아의 놀 권리 및 학습권 보장을 통한 전인발달 도모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치원 교원의 놀이 지원 역량 강화
- 토론과 협력, 나눔을 통한 문제 해결 및 교육 혁신의 유치원 교육공동체 형성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구정은

전화번호

063) 270-6121



### ● 추진 목적

-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연구 결과 일반화
- 부모의 유아 놀이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부모-자녀 간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 추진 근거

- 2023 주요업무계획(전북교육 2023-001)

### ● 추진 내용

- 미래형 거점유치원 운영
  - 대 상: 공·사립유치원 8개원(원당 20,000천원)
  - 운영과제: 누리과정에 근거한 디지털 유아 놀이 환경 지원 방안
  - 운영주제: 운영과제에 따른 유치원별 운영주제 선정
  - 일 반 화: 수업 나눔 및 협의회(연 2회 이상), 보고서 탑재
    - 수업열기: 미래형 교육과정 아이디어 공유 및 자료 일반화
    - 보고서 탑재(2024. 2.):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 미래형 학부모놀이교실 운영
  - 대 상: 공·사립유치원 8개원(원당 10,000천원)
  - 운영과제: 학부모 놀이지원 역량강화 방안
  - 운영주제: 운영과제에 따른 유치원별 운영주제 선정
  - 일 반 화: 운영현황 공개(연 2회 이상), 보고서 탑재
    - 유치원 공개: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아이디어 및 자료 일반화
    - 보고서 탑재(2024. 2.):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 ● 기대 효과

- 원격수업 및 미래형 수업환경에 대비하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 기반 마련
- 유아 놀이와 배움에 대한 학부모 이해 도모 및 놀이 지원 역량강화
-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일반화 기여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구정은  
장학사 윤세은

전화번호

063) 270-6121  
063) 270-6126

**이음교육이란?**

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보육기관(지역사회, 학부모 포함)이 상호 존중 및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설계하고 함께 실천하는 교육

**추진 목적**

-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유아에게 교육의 계속성과 연속성 제공
- 유아의 발달과 놀이 경험이 이어질 수 있는 유·보, 유·초 협력적 연계 사례를 발굴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한 활성화 지원

**추진 근거**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2023년 유아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기본계획 알림(교육부)

**추진 방향**

- 유·보 및 유·초 연계 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 공감대 형성
- 지역,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연계성, 협력성, 지속성, 다양성을 원칙으로 운영

- 연계성: 상호 교육과정에 반영
- 협력성: 기관 구성원 상호간
- 지속성: 교육과정 설계부터 평가까지
- 다양성: 각 기관 교육과정의 존중

- 운영 유치원은 연계 교육과정 운영, 연계 기관(어린이집, 초등학교) 상호이해도 제고

**추진 내용**

- 유치원별 특색있는 이음교육 운영
  - 교육내용, 생활지도, 교육환경 등 전반적 분야 연계 교육
  - 유·보·초 인적자원 활용 교육
  - 물리적 환경 및 교육 시설 자원 공유
-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간 상호 교류 확대
  - 상호방문, 상호 수업 참관·나눔, 정보교환 등
  - 공동연구, 교원연수회 등 학습공동체 활성화
  - 학부모 공동 워크숍 운영 등

- 유·보 및 유·초 이음교육 운영 유치원 지원

- 대 상: 공·사립유치원 4개원(유치원당 7,000천원)

- 운영 유형: 유·보 / 유·초 / 유·보·초

- 운영 내용

- 연계 기관(어린이집,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 운영

- 연계 기관(어린이집, 초등학교) 간 상호이해 활동

- 교원의 공동 역량 강화 노력

- ▶ 0~2세 표준보육과정, 초등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 이수 권장

- 학부모의 유아 놀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일반화: 수업 나눔 및 협의회(연 2회)

- ※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개인 책상 배열, 글씨쓰기, 숫자 익히기 등 유치원 교육 과정의 내용을 상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교육(지원)청 지원

- 교원연수회 운영 지원

- 유·보 및 유·초 이음교육 운영 유치원 공모 및 지원

- 공동 공유회, 포럼, 교원 네트워크 지원

-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교육공동체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기대효과

- 연계 기관 간 이음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유·보 및 유·초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윤세은

전화번호

063) 270-6126

**추진 목적**

- 소규모 유치원 간 협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

**추진 근거**

- 2023년 유아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기본계획 알림(교육부)

**추진 방향**

- 지역,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전문성 제고
-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

**추진 내용**

- 소규모 유치원(1학급)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선정, 협력적 교육활동 운영, 행사 및 체험학습 공동 운영 등
- 교원 역량 강화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수업사례 공유, 학습공동체 운영 등
- 교수매체 및 시설 공유
- 일반화: 수업 나눔 및 협의회(연 1회)

**기대효과**

- 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 모델 확산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교원의 이해도 제고



### ● 추진 목적

- 유아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는 교육과정 질적 심화
- 미래형 유아 교육과정 성과 공유 및 일반화
-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립유치원 새로운 모델 창출

### ● 추진 근거

- 2023 주요업무계획(전북교육 2023-001)
- 2023 전북미래학교 추진 계획

### ● 추진 방향

- 모든 유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 따뜻한 유아교육 공동체, 민주적 자치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운영 지원

### ● 추진 내용

- 혁신유치원 성장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
  - 혁신유치원 주체별 연수 운영(5~6월, 9~10월)
  - 혁신유치원 컨설팅 실시(4~6월)
  - 혁신유치원 주체별 네트워크(원장, 원감, 담당교사, 학부모 등) 조직 운영(4~11월)
- 혁신유치원 운영 성과 공유 및 일반화 지원
  - 혁신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10~11월)
  - 혁신유치원 네트워크 활동 사례 나눔 실시(11~12월)

### ● 기대효과

- 혁신유치원의 민주적 소통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의 질적 심화 및 유아의 미래역량 함양

※ 협조: 지역단위 혁신유치원 워크숍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구성은

전화번호

063) 270-6121



### ● 추진 목적

- 현장 중심 유치원 평가를 통한 유아교육 질 제고 및 교육서비스 개선
- 학부모의 알 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

###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가의 대상)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평가의 기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 ● 추진 방향

- 교육공동체의 성찰중심 자체평가로 유치원 환경 개선 및 교원 역량강화
-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
- 컨설팅 장학과 연계하여 영역별 내실있는 평가 실시

### ● 추진 내용

- 평가기간: 2023. 3. ~ 2024. 2.
- 평가대상: 공·사립유치원 전체
- 평가방법: 자체평가
- 평가영역: 교육과정,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 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 → 평가 결과 제출 및 검토 → 평가 결과 공개
-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
  -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공개(유치원 홈페이지, 정보공시)

### ● 기대효과

- 유치원의 자율적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으로 책무성 강화
- 유치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 및 만족도 향상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윤세은

전화번호

063) 270-6126



### ● 추진 목적

-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정서발달 및 행복감 증진
-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학부모 만족도 제고

###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
- 2023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교육부)

### ● 추진 방향

- 연중무휴(공휴일 제외) 원칙으로, 유치원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실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놀이 중심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편성·운영
- 유아 사교육 문화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중심 활동 및 수익자 부담경비가 발생하는 과도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지양 원칙

### ● 추진 내용

- 운영계획
  - 방과후 과정 연간계획 수립 및 유치원 운영계획에 반영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 ① 유치원 여건 및 학부모 수요 조사 등을 반영하여 방과후 과정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②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계획(미 참여 유아 대책 포함), 운영시간, 운영 장소, 참여대상, 인력배치, 소요비용, 안전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 포함
- ③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④ 방과후 과정 운영 사항 정보공시 탑재(『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2)
  - 운영 시간, 학급편성, 참여유아 수, 방과후 과정 교육비용,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비 등

- 운영일수 및 시간

- 운영일수: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
- 운영시간: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되, 개별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이용 시간 조정\* 가능

\* 1시간 이내의 이용시간 조정은 전체 유아 대상 일괄 적용이 아닌, 개별 유아 대상 적용 시간임

- 학급편성: 전라북도교육청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적용

- 이용대상

-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 학부모 수요 및 유치원별 수용 여건에 따라 교육공동체에서 참여 대상 결정

- 운영내용

-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놀이 중심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편성·운영
- 유아 발달을 저해하는 학습 중심 활동 및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하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지양 원칙 (단, 학부모 수요에 따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편성 시 도교육청 기준 반드시 준수)

- 안전관리

-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 매일 참여·미참여 현황 파악
- 참여 유아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학부모 동반 귀가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성인) 사전 지정제 실시
- 건강 이상 등 특이사항 발견 시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
-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간식지도 및 관리(방학 중 방과후 과정 급식 포함)

- 방학 중 급식 운영

- 방학 중 자체급식 권장, 자체급식 미운영 유치원은 위탁급식 활용으로 학부모 도시락 지참 불편 해소
- 공립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급식 개선비 지원
- 위탁급식 시 제공 업체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졸업식 이후 졸업생 방과후 과정 이용

- 유아는 졸업식 이후에도 학년도가 끝나는 2월 말일까지 방과후 과정 이용 대상임
- '졸업'은 '졸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졸업은 「유아교육법」에서 학년도가 끝나는 2월 말일임

- 방과후 과정 운영 평가 계획

- (유아 평가)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유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
- (방과후 과정 운영 평가) 방과후 과정이 유아·놀이 중심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 (방과후 과정 운영 결과 학부모 설문 조사) 방과후 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 설문 조사 후, 결과를 다음 연도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

## 기대효과

-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도모
- 방과후 과정 및 돌봄 공백 최소화로 학부모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윤세은

전화번호

063) 270-6126

1-8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유아 경험 확장 등을 위해 학부모·유아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특정분야 활동 학부모 수요 조사 실시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수립(미참여 유아 대책 포함) →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회의록 공개) →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탑재

## 추진 목적

- 유아 발달에 적합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아의 다양한 경험 확장
- 학부모 수요에 따른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
- 2023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교육부)

## 추진 방향

- 학부모 수요에 따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과도한 학습 중심 활동 및 수익자 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지양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운영
- 신청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미참여 유아 지도를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리 철저

## ● 추진 내용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하되 부득이 운영할 경우 세부지침 준수하여 운영

### ● 운영절차

- 학부모 수요 조사 실시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수립(미참여 유아 대책 포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회의록 공개) →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탑재

### ● 운영원칙

- 유아 1인당 주 3개 이하, 1일1개, 30분에서 1시간 이내, 프로그램 당 1회로 운영
- 반드시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에서만 실시
-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지나친 학습중심 활동 지양 원칙하에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 등 유아교육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

### ● 프로그램 비용 산정

- 참여유아 수, 실시 횟수, 강사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비 내 운영으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지향
- 1시간 35,000원 권장(농어촌지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추가 지원 가능)

### ● 프로그램 선정 및 위탁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부모 사전 수요 조사 실시
- 설문결과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필수
- (개인위탁)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인 경우 등 총2년 이내 연장 계약 가능
- (업체위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실시

### ● 프로그램 강사 자격

- 개인·업체위탁 강사 공통
  -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 지역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
  - 당해 유치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재공고 시에만 지원 가능(강사 모집 공고 시 정확히 안내)
- 외국인 계약 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검증·확인 철저
  - ※ 외국인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회화지도 (E-2)체류자격” 외국인은 유치원에서의 활동 금지

### ● 강사 계약 시 참고 사항

- 강사 계약은 위·수탁 계약이며 채용계약, 근로계약이 아님에 유의

- (개인위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평가를 거쳐 총 2년 미만으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등으로 인한 미운영 기간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연장을 위한 계약 변경을 할 때에도 계약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함
- (개인위탁)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적용(사업자등록증 미제출)
  - ※ 개인위탁 강사는 주 14시간까지만 가능
- (업체위탁)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과 업체 소속 강사의 질 등을 우선적으로 검증

● **평가 및 환류**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지도 강사별 만족도 조사 실시
-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연 1회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공개 실시
-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운영 계획에 반영

● **기대효과**

-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운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 보장
- 학부모의 사교육 문화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

1-9

돌봄교실 운영 지원



**추진 목적**

-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돌봄교실 운영으로 유아의 정서 발달 및 행복감 증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유아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학부모의 돌봄 및 양육 부담 경감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
- 2023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교육부)

**추진 방향**

- 학부모의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외의 아침 돌봄,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 등 연중 운영
- 유아의 정서발달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한 놀이와 휴식 중심 돌봄으로 편성
- 감염병 등 휴업 상황에 대비하여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연 1회 이상 학부모 대상 의견조사 실시 및 반영
- 세부사항은 유치원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

**추진 내용**

- 운영 형태

구분	내용	운영시간(예시)
아침 돌봄교실	아침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전까지 운영	07:40~09:00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후부터 19:00까지 운영	17:00~19:00
저녁 돌봄교실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후부터 20:00까지 운영	17:00~20:00
온종일 돌봄교실	아침돌봄+(교육과정, 방과후 과정)+저녁돌봄으로 운영	07:40~22:00

\*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임(개별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이용 시간 조정 가능, 운영 시간 일괄 조정이 아님)

- 운영 유치원

- 온종일 돌봄교실: 2개원(공립 1개원, 사립 1개원)
- 저녁 돌봄교실: 13개원(사립 13개원)
-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39학급(공립 10학급, 사립 29학급)

- 이용대상

-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유아 중 희망자 우선
- 학급편성: 돌봄교실(1교실 당) 대상 인원은 20명 내외(최대 22명) 권장
- 참여 유아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예산지원: 유형별 돌봄교실(온종일, 저녁, 방과후 과정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기타 운영비 등

- 인력배치

- 돌봄 담당인력
  - 온종일, 저녁돌봄: 돌봄전담사(도교육청 기준 적용)
  -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
- 돌봄 담당 수당은 1시간(60분) 15천원, 1일 2시간 기준
- ※ 아침·저녁 돌봄 등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돌봄에 참여하는 교사의 경우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 가능(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980, '22.2.23.)

- 안전관리

- 돌봄교실에 대해 전체적인 안전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 수립
-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확보
- 돌봄교실 참여 유아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학부모 동반 귀가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성인)사전 지정제 실시
- ※ 돌봄 운영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유치원 주변 지구대 등과 협력하여 순찰 및 유치원 주변 경비 강화
-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아의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건강관리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급식 제공
- 유아 영양기준량에 충족하는 식단 관리 및 운영
- 정수기 등 먹는 물 정기 검사 실시
- 보존식 관리 및 검식 철저

- 운영 평가 및 환류

- 학부모 만족도 조사, 돌봄교실 활동 계획 검토,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및 환류 실시
- 평가 결과는 공유하고 돌봄교실 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

**기대효과**

- 유아·놀이 중심 돌봄교실 운영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교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학부모 요구에 맞는 돌봄교실 지원으로 학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윤세은	전화번호	063) 270-6126
------	--------------	-----	---------	------	---------------



Ⅲ  
2023년  
핵심과제별  
주요 사업

## 제2장

# 현장 지원 열린 행정

2-1. 유치원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2-2. 유치원 장학

2-3.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 등 지원

2-4.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

2-5.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등 표창



**추진 목적**

-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제고
- 공감·소통·나눔을 통한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지원 대상**

- 관내 공·사립유치원 교원

**추진 내용**

- 집합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지원
  - 리더쉽 함양을 위한 관리자 연수
  -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연수
  - 실천하는 생태환경교육 연수
  - 미래생태환경 선진교육기관 방문
  -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연수
- 유아·놀이 중심 수업개선을 위한 연수
  - 개정 누리과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례 나눔, 연수, 워크숍 등 실시
- 나래교사 성장 지원단 운영
  -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 현장 연수
  - 단위유치원 컨설팅 지원
  - 나래교사 교육과정 운영 지원

**기대효과**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행력 강화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구정은

전화번호

063) 270-6121

**추진 목적**

- 교육공동체가 소통·협력하는 교육과정 중심 유치원 문화 조성
- 소통과 협력에 기초한 학습공동체 구축으로 교원 역량 강화
- 유치원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장학 지원 체제 구축
- 참여 위주의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유치원 교육력 제고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17조
-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추진 방향**

- 원내 장학, 컨설팅 장학, 지원 장학 등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장학 강화
  - 원내 장학 활성화로 자기 수업성찰 및 동료 간 수업동행 실천
  - 컨설팅 장학 강화로 학습공동체 내 교육활동 나눔 및 멘토링 확산
  - 교육(지원)청 지원 장학 운영으로 유치원 교육력 제고
-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분야 컨설팅 장학 강화
  - 전라북도 교육정책 지원
  - 교육과정(교육과정 편성·운영, 놀이 이해, 놀이 실행, 놀이 지원 컨설팅 등)
  - 방과후 과정(방학 중 운영, 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등)
  - 교수·학습(놀이 기록지 작성 및 가정과의 연계, 학습공동체 운영 등)
  - 생활·안전교육(유아 자치활동, 인성·인권교육, 유치원 안전관리 및 교육 등)
  - 유치원 및 학급운영(유치원 업무최적화 및 유치원 자치, 민주적 유치원 문화 정착 등)
  - 교육활동 멘토링 등(신규교사, 신규원감)
  - 유치원 (기관) 평가 등
- 원내 장학 활성화로 자기 수업성찰 및 동료 간 수업동행 실천
- 컨설팅 장학 강화로 학습공동체 내 교육활동 나눔 및 멘토링 확산
- 컨설턴트 역량 강화 지원으로 컨설팅 질 제고
- 교육(지원)청 지원 장학 운영으로 유치원 교육력 제고

## 추진 내용

- 대상: 관내 공·사립유치원 교원
- 기간: 2023. 3. ~ 2024. 2.
- 추진기관 및 절차

도교육청(기획·운영)	교육지원청(운영)	유치원(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 계획 수립 및 안내</li> <li>· 컨설팅 장학 및 지원 장학 역량강화 지원</li> <li>· 현장 요청에 의한 컨설팅 장학 및 지원 장학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청 장학 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현장 중심 컨설팅 장학 지원 및 예산 확보</li> <li>· 지원 장학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내 장학 계획 수립 및 실천</li> <li>· 컨설팅 장학 및 지원 장학 요청</li> <li>- 컨설팅 장학 및 지원 장학 결과 지속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li> </ul>

## 장학 영역

가. 원내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장학</li> <li>· 동료장학</li> <li>· 연수, 교원연수회 활동</li> </ul>
나. 컨설팅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공동체 수업 나눔</li> <li>· 수업 멘토링</li> <li>· 수업 초청</li> <li>· 유치원 간 만남 컨설팅</li> </ul>
다. 지원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지원 장학</li> <li>· 유치원 담당 지원 장학</li> </ul>

- 결과 활용: 컨설팅 장학 사례 나눔 및 공유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구정은

전화번호

063) 270-6121



### 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 ● 추진 목적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의 단계적 완화

####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8조, 제26조, 제28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 ● 추진 내용

- 지원내용

연도	2023년				
구분	기본급보조			담임수당	합계
	교직수당	인건비보조	장기근속수당		
금액	25만원	35만원 (2022년 대비 2만원 인상)	4만원 (2022년 대비 1만원 인상)	13만원	77만원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
  -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정년(만 62세)을 초과하지 않은 교원
  - 1일 8시간 이상 상시 근무 교원
  - 사학연금, 건강보험 가입 교원
  - 인가학급 범위 내 편성학급의 학급담임 교원(담임수당의 경우)
    - \* 2학급 이하인 경우 원장, 원감의 학급담임 시 담임수당 지급 가능
  - 주 15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교원(담임수당 미지원)
  - 원장(또는 원감)자격소지자로 임용된 원장(또는 원감)
    - \* 직무대리 원장(또는 원감)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사립유치원 교원의 '월 평균 소득액'이 『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건표』의 동일 호봉 '기준소득월액' 이상인 교원
- 타 기관을 겸직하거나 타 기관에서 월급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현재 해당 유치원 소속이 아닌 교원
- 교육과정 또는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보조하는 교원
- 1주 15시간 미만 방과후 담당 교원
- 사학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기관부담금 미납 유치원
- 「2023년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지원금 지원 계획」 상 지원을 받는 교원

- 지원 제외 기간

- 휴직 기간
- 복무 규정 위반 해당 기간(「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 지급 시 임금수준 상향 시까지의 기간
- 학급담임 교원의 출산휴가 또는 1개월 이상 담임 업무 미수행(병가 등) 기간 담임수당 미지급 시 일할 계산

## 나. 단기대체강사비 지원

### ● 추진 목적

- 출산·결혼 등에 대한 휴무 보장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 인건비 지원을 통한 대체강사 고용 부담 완화

###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6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32조

### ● 추진 내용

- 지원대상
  -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학급담임 및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 중,
    - 원감, 원장 자격연수에 지명되어 실제 참여한 교사
      - \*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중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서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원감 포함
    - 1정 자격연수에 지명되어 연수에 실제 참여한 교사
      - \* 연수 참여 일수에 따라 지원
    - 4일 이상의 병가가 필요한 교사
      - \* 진단서로 증명된 경우 지원

- 4일 이상의 공가가 필요한 교사
- 도교육청 주관 국외 연수 대상으로 실제 참여한 교사
  - \*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서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원장, 원감 포함
- 출산 및 결혼 등의 특별휴가가 필요한 교사
  - ※ 연가, 4일 미만 병가 등으로 인한 단기대체강사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단가: 1일 77천원
  - 지원액 산출: 단기대체 강사 근무 산정일수(근무일수 + 주차일수)×77천원
- 지원내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경조사 유형 및 법정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 중 단기대체 강사비 지원

[별표 2] 경조사 유형 및 법정휴가일수

구 분		대 상	법정휴가일수
경조사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휴가		본인	90

※ 입양의 경우 「입양추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 다. 육아휴직수당 지원

### ● 추진 목적

-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 ● 추진 근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22.3.25. 시행)
- 유아교육법 제26조

### ● 추진 내용

-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 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교원
- 지원내용

구분	휴직기간	산출내역	하한액	상한액
기본	육아휴직시작일~ 12개월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80%)	70만원	150만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두 번째 휴직자 교원	육아휴직시작일~ 3개월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	70만원	250만원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80%)	70만원	1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교원	육아휴직시작일~ 3개월째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	70만원	250만원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휴직시작일 월봉급액*80%)	70만원	150만원

\* 월봉급액: 휴직 직전 월 급여명세서의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기본급 보조 등 지원액 제외)

### ● 기대효과

- 육아휴직수당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및 사기 진작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주무관 장원진	전화번호	063) 270-6123
------	--------------	-----	---------	------	---------------

## 2-4

##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



### 추진 목적

- 사립유치원 교사의 업무부담 해소
-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고용 부담 완화
-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의 내실화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7조

### 추진 내용

- 지원내용
  - 방과후 과정 담당 강사를 임용한 사립유치원
    - 유치원별 2명 지원(2학급 미만 유치원 1명 지원)
    - 주 15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방과후 과정 강사 자격 조건
  - 「유아교육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교사 또는 「영유아보육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보육교사
  - 「교육공무원법」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정년(만 62세)을 초과하지 않은 강사
- 방과후 과정 강사의 역할
  - 방과후 과정 교육 및 돌봄
    - ※ 특성화프로그램 시간에는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행정 업무에 활용하지 않도록 함(임용 시간 준수)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주무관 장원진

전화번호

063) 270-6123

**추진 목적**

- 유치원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직무만족도 향상
- 유아교육의 우수성 홍보 및 유아교육 기관의 위상 정립

**추진 근거**

-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2조, 제5조

**추진 내용**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 시기: 2023. 11월
  - 대상: 공·사립유치원 유공교원 및 전문직, 업무담당 공무원 등
  - 표창기준: 교육부 2023년 표창 계획에 따름
- 전라북도교육감 표창
  - 시기: 2023. 12월
  - 대상: 공·사립유치원 유공교원
  - 표창기준: 전라북도교육청 2023년 표창 계획에 따름
-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
  - 시기: 2023. 12월
  - 대상: 공·사립유치원 유공교원
  - 표창기준: 전주교육지원청 2023년 표창 계획에 따름

## 제3장

#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교육환경

- 3-1. 유치원정보공시제도 정착
- 3-2.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
- 3-3.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지원
- 3-4. 행복안심유치원 운영 지원
- 3-5. 유아 성교육 내실화 교육
- 3-6. 유치원 보건환경 개선
- 3-7. 유치원 급식안전 강화
- 3-8.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
- 3-9.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3-10.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 3-11.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



### ● 추진 목적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보장
- 유치원정보공시 자료 검증체계 구축을 통한 공시자료 신뢰도 향상
- 유치원 운영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 추진 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 추진 방향

- 유치원정보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공시자료의 신뢰도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 ● 추진 내용

- 공시 후 유치원정보공시 자체 점검

시기	주관기관	대상기관	내용
상·하반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반복적 오류가 많은 유치원 - 시정권고·명령을 받은 유치원	정보공시항목 및 오류사례 점검

\*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유치원 현장 점검 시행 여부 및 추진 일정 조정

- 기관별 역할 정립을 통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구 분	지원 관리 내용
유치원	○ 유치원정보공시 항목별 작성자/확인자 지정·운영 ○ 공시자료 입력 및 제출, 공시 ○ 공시입력 근거자료 관리
교육지원청	○ 관할 유치원 공시업무 지원 ○ 유치원 공시자료 수합/관리 및 검증 ○ 공시정보의 정확성 관리 및 현장점검
도교육청	○ 유치원정보공시 계획 수립 및 통보 ○ 유치원 공시자료 수합/관리 및 검증 ○ 공시정보의 질 관리 및 현장 점검 ○ 교육지원청 공시업무 지원

\* 행정용 메신저, e-mail 등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공시 주기별·단계별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공시업무 추진 효율성 강화

• 공시 전 단계별 검증 체계화를 통한 공시정보 신뢰도 제고

해당기관	단계별 검증 내용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시스템 입력 전에 공시 입력근거자료를 작성하여 대조·확인</li> <li>○ 2차: 원자료 취합 후 나이스, e-유치원시스템 등 자료와 확인 검증</li> <li>○ 3차: 확인자가 근거자료를 이용 검증 ※ 정보 수정 및 재입력 시 1·2·3차 순 재검증</li> </ul>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유치원에서 제출된 자료 검증</li> <li>○ 2차: 유치원별 입력 자료와 '입력 근거자료'를 대조·확인 검증 ※ 오류 정보 입력 유치원에 통보하여, 시스템 입력 자료 수정 조치</li> <li>○ 3차: 필요시 유치원 현장 방문 실태조사 검증</li> </ul>
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증</li> <li>○ 2차: 유치원별 입력 자료와 '입력 근거자료'를 대조·확인 검증</li> <li>○ 3차: 각 세부 항목 담당자(부서) 검증 의뢰(필요시) ※ 오류 정보 입력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 시스템 입력 자료 수정 조치</li> </ul>

 기대효과

-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국민의 알 권리 증진
- 공시자료의 신뢰성 제고

**추진 목적**

- 유아교육 전 주기 전자적 업무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 4세대 나이스 기반의 유아교육 서비스 구축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4조(생활기록부)
- 유아교육 전 주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유아교육정책과-2539, 2020.5.1.)
-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정(유아교육정책과-5525, 2021.10.19.)

**추진 내용**

-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를 통한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 시스템 별로 분산 관리되는 데이터 통합 및 통합 인증 체계 구축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내·외부 연계 서비스 도입
- 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 업무 정보화
  - 교육과정 운영과 유아학비 연계를 통한 교원 업무 경감
  -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사행정의 정보화 및 회계시스템 연계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연계하여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 지급
- 나이스 통합 활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 유치원 생활 정보 전송을 통한 학부모 안심 서비스 지원
  - 인사정보에 대한 온라인 민원 발급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주무관 배수호

전화번호

063) 270-6122



### 추진 목적

- 전체 사립유치원의 디지털 재정 운영을 통한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 법과 회계 규칙에 기반을 둔 K-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 추진 방향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실시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시지원체계 구축

### 추진 내용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실시
  - 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대상: 사립유치원
  - 장소: 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 내용: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예산·수입·지출 시스템 기능 교육, 회계교육 등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시지원체계 구축
  - 도교육청 담당인력 및 희망 사립유치원과 지방공무원 멘토 1:1 수시 컨설팅
  - 상설교육장 수시교육 및 시스템 작업 실시
  - 자체 콜센터와 원격지원을 통한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실시간 지원

### 기대효과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한 시스템 사용자 역량 제고

담당부서

재정협력과 예산담당

담당자

주무관 곽윤영

전화번호

063) 270-6169



### 추진 목적

- 유치원의 유아 건강·안전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교직원 안전의식 고취 및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 추진 근거

-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
- 2023년 유아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기본계획 알림(교육부)

### 추진 배경

- 유치원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 필요

### 추진 내용

-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역량 연수 실시
  - 안전환경 조성 및 행복안심유치원의 이해 도모를 위한 연수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한 공·사립 유치원 지원
  - 자체 평가서 및 사업 계획서 검토
  - 필요시 현장 실사
- 안전·교육·예산 분야 종합컨설팅 실시
  - 유치원 실내외 환경, 위생안전
  - 실내외 시설물 안전
  - 등·하원 안전 및 급·간식 영양 등
- 유아, 학부모 및 교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신뢰도 제고
- 운영 결과 나눔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개선 사례집 제작 및 누리집 탑재를 통한 확산
  - 운영 계획서 제출: 2월중(유치원)
  - 대상 유치원 선정 및 추천: 3월중(도교육청)
  - 예산 지원 및 컨설팅: 4월중(도교육청)
  - 행복안심유치원 조성: 4월 ~ 11월(유치원)

### 기대 효과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유아 안전사고 예방
- 유치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주무관 배수호

전화번호

063) 270-6122



### ● 추진 목적

- 유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으로 성 인권 침해 사전예방
- 유아 성 행동(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 성 행동(문제) 문제 예방
- 유치원 교원의 유아 성 행동 관련 이해 제고 및 업무 대응력 제고

### ● 추진 근거

- 유치원 성교육 내실화 추진 안내(교육부)
- 유치원 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 대응 지침(교육부, 2020.8.)

### ● 추진 내용

- 유치원별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유치원 성교육 운영
  -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 유치원별 성교육 업무 담당 교원(유치원, 학급)을 지정하여 성 행동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 지원 및 사안 발생 시 신속 처리
    - 유치원 성교육 담당교원 연수 이수 및 전달 연수 실시(최소 3시간 이상)
  - 성교육 계획 수립
    - 유아 성 행동 판단 기준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성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활용한 단위유치원별 성교육 계획 수립·정비
    -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누리과정 내용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 대상 성교육 내실 운영 (8시간 이상)
- 유아 성 행동 수준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체계적인 지원 강화
  - 교원 등 연수 지원, 성 행동 조치 사례별 종합적 대응 방안 지원을 위한 유아 성 행동문제 사례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유아 연령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통해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사안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 지원
- ▶(구성) 교육청(총괄), 유아교육전문가, 해바라기센터, 의사, 경찰,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
- ▶(역할) 행동수준별 유아 성 행동 중 자문, 초기 조사에 따른 사례 평가, 부모간 중재안 및 상담·치료 연계, 교육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절차) 사건발생 접수 → 초기조사(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과 합동) → 사례위원회 → 사후 관리

• 유아 성 행동 수준에 따른 관리·대응 체계

행동 수준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유치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 성교육담당자 지정</li> <li>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 지도, 관찰</li> <li>일상적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교육</li> <li>(필요시) 교육청 자문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동중지, 상황 파악</li> <li>부모 면담</li> <li>(필요시) 학부모, 유아 대상 관련 교육</li> <li>(필요시) 교육청 자문·지원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시 중지, 분리 조치, 모든 유아 보호</li> <li>상황 파악</li> <li>보호자 연락, 피해아동 치료 연계</li> <li>교육청 즉시 보고 및 사례관리 지원 요청</li> </ul>
교육 (지원)청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청시) 유치원 방문 컨설팅</li> <li>(필요시) 유치원 자문·대응 지원</li> <li>우려 또는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시 상위 수준에 맞게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 자문</li> <li>사례별 대응 지원</li> <li>자문·지원 과정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시 사례위원회 회의 요청 (위험한 수준에 준하여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청 보고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li> <li>초기조사 지원</li> <li>사례위원회 총괄 지원</li> <li>중재안 및 치료·상담 등 사후관리 연계 방안 마련 지원</li> <li>관련 내용 모니터링 지속</li> </ul>

🌱 기대효과

- 유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으로 바람직한 성 정체성 형성
- 유아의 성 행동(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의 성 행동 (문제) 대응력 신장



### ● 추진 목적

- 유치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및 원사(園舍) 내 공기 질 개선

### ●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교육부 지침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 추진 방향

-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한 학생 건강 보호
- 원사(園舍) 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 ● 추진 내용

- 원사(園舍) 먹는 물 관리
  - 수도물 관리대책
    -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실시
    - 저수조(물탱크) 청소: 연 2회(반기별 1회) 실시
    - 옥내급수관 일반검사: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1회 이상
  - 정수기 관리대책
    - 정수기 수질검사: 연 4회 (분기별 1회)
- 원사(園舍) 내 공기 질 관리
  - 외부 전문기관(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17종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공기 질 측정(공기 질 측정 결과 및 부적합 시 조치 결과를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의무화)

### ● 기대효과

- 유치원의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치원생과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 ● 추진 목적

- 유아기 성장 발달에 따른 영양관리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유치원급식 제공으로 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 추진 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 2
- 학교급식법 제4조, 제6조, 제7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3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 ● 추진 방향

- 2022.10월 정보공시 기준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및 공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 적용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치원급식 안정화
- 유치원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 ● 추진 내용

- 유치원급식 운영의 내실화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유치원 급식에 관한 급식 운영
  -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유치원급식의 영양·위생관리 강화
  - 급식 운영평가 연 1회 실시
  - 급식비 지원과 적정 집행관리
  - 유아·학부모에게 다양한 급식정보 제공과 소통 가능한 열린 급식 운영
- 위생·안전 관리 강화
  - 급식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및 6개월에 1회 건강검진 실시
    -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유예: 연 1회(별도 안내시까지)
  - 유치원급식 위생·안전점검 연 2회, 유관기관 합동 점검 연 1회 실시
  - 유치원급식 식중독 및 이물질 혼입 예방 관리 강화
  - 유치원급식 조리용구 미생물 검사 연 1회 실시
  - 급식관계자 위생·안전 교육 실시

- 보존식 관리 및 검식
  - 당일 제공하는 모든 음식(간식 포함)을 배식 직전에 보존식 용기에 1인 분량(150g 이상 권장)씩 독립적으로 담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보관
  - 조리 완료 즉시, 배식하기 전에 조리책임자 및 급식 관리자가 검식 후 결과를 “검식일지”에 기록·비치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유해물질 없는[6無]식재료 사용)」 준수
  -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 등급 등 품질기준 명시 및 검수서 작성·보관
- 유아 성장 발달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준수
  - 유아 영양관리기준 준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3)
  - 제공 식단의 영양량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원산지 표시를 식사장소 및 누리집 등에 게시·공개



담당부서	생활교육과 학교급식담당	담당자	주무관 남궁현	전화번호	063) 270-6067
------	--------------	-----	---------	------	---------------

**추진 목적**

- 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유아 안전사고 발생 요인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

**추진 근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추진 내용**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안전교육 안내
- 안전교육 실시 현황 작성·관리



### ● 추진 목적

-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 및 의심 시 신속한 신고로 아동학대 예방
- 위기가구 긴급지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보호
- 조기발견을 위한 유치원 결석 아동 및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

###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및 제26조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 ● 추진 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
  - 유치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등 필요 조치 이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단결석 아동 및 퇴학 아동 관리 강화
    - 2일 이상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 명확한 사유 없이 자퇴 신청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 아동의 출결사항을 매일 확인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해당
  - 유치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즉시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수 필수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주무관 배수호

전화번호

063) 270-6122



### 추진 목적

-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전문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및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등 유치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 지원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 유아교육분야 예산 편성 협조 요청(유아교육정책과-4526, 2022.10.11.)

### 추진 내용

- 지원 대상 및 기준
  - 2023. 3. 1. 현재 운영중인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휴원 제외)
  - 사립유치원 1개원당 행정직원 1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기본급 및 퇴직금 지원(4대보험 기관부담금 제외)
- 채용보고
  - 채용(계약) 후 7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채용보고

제출시기	제출서류(최초임용)	제출서류(재임용)
채용 후 7일 이내	채용 보고 서식,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보안서약서, 업무분장표 각 1부	채용 보고 서식 계약서 사본 업무분장표 각 1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주무관 배수호

전화번호

063) 270-6122

**3-11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



**추진 목적**

- 유치원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 제공
-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유아와 자원봉사자 사이의 감성 교류를 통한 유아의 안정된 정서 함양 도모

**추진 근거**

- 2023 전북유아교육계획(전북교육 2023-138)

**추진 내용**

- 자원봉사자 대상: 만 60세 이상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봉사 정신이 강한 여성
- 운영기관: 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포함)
- 위촉 기간: 2023. 3월 ~ 2024. 2월(1년 이내로 설정)
- 봉사 시간: 주 15시간 미만
- 실비(교통비 등): 시간당 8,300원
  - 소요 예산은 운영 유치원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
  - 임금의 개념이 아닌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교통비)로 초과 지급 불가
    - ※ 유치원과 자원봉사자가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내용 결정
- 시니어클럽 연계 유치원 보조인력 지원 협약 체결
  - 2021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협의(2021.8.10.)
  - 인력 관리 및 예산 주관 기관: 전라북도청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주무관 배수호	전화번호	063) 270-6122
------	--------------	-----	---------	------	---------------



III  
2023년  
핵심과제별  
주요 사업

## 제4장

# 공정과 상생교육

- 4-1. 유아학비 지원
- 4-2. 다문화가정 유아 등에 대한 지원
- 4-3.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4-4.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 4-5.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 4-6.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
- 4-7. 「쓰담쓰담 유아마음동행」 유아의 성장과 발달 지원
- 4-8. 유치원 학급당 정원 적정화



### 추진 목적

-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추진 방향

- 안정적인 유아학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해소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 지원

### 추진 내용

- 유아학비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유아학비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취학 대상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방과후 과정비	- 공·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 (교육과정 포함 1일 7~8시간 이상)하는 유아

\*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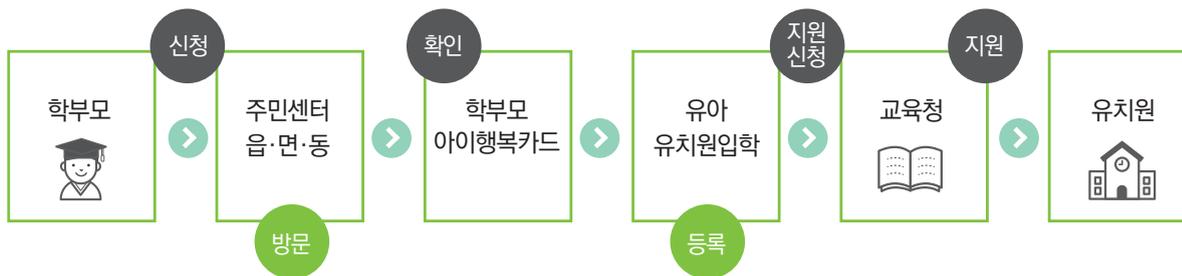
- 지원 연령 및 지원액

(단위: 원)

구 분	연 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만 5세	2017.1.1.~2017.12.31.	100,000	280,000
	만 4세	2018.1.1.~2018.12.31.		
	만 3세	2019.1.1.~2020.2.29.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7.1.1.~2020.2.29.	50,000	70,000
계			150,000	350,000

● 유아학비 신청 절차 및 기타사항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 유아학비 지원 연령 및 단가, 신청 절차, 무상교육 기간(3년) 종료 시 유아학비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사전 안내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학부모부담금 1인당 200,000원 실비 지원
- 보호자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e-유치원시스템에 반영되면 자격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지원 연령 및 지원액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만 3~5세 (저소득층)	2017.1.1.~2020.2.29.	-	200,000 (실비 상한액)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주무관 장원진    전화번호 (063) 270-6123

**추진 목적**

-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 외국국적 유아 누리과정 학비 지원 확대
-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추진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2, 제9조

**추진 내용**

-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맞춤형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및 인지능력 발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통합교육 실시
  - 다름에 대한 존중, 문화다양성 교육, 언어교육, 학부모 교육 및 교원 교육 지원
-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 외국국적 유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 다문화가정 유아와 비다문화가정 유아가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 다문화정책유치원: 2개원(공립 1개원, 사립 1개원)
  - 다꿈사랑방유치원: 29개원(공립 14개원, 사립 15개원)

**추진 목적**

- 공·사립 유아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

**추진 근거**

- 제19대 교육감 공약사업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내용**

-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전북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 현재 유아학비(교육과정비)를 지원받고 있는 만 3~5세 재원 유아
- 지원기간: 2023. 3. 1. ~ 2024. 2. 29.
- 지원금액: 대상 유아 1인당 월 135,000원 지원
- 지원조건
  - ①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지원'에 동의
  - ② 학부모부담금(원비) 징수 금지

※ 단, 2022학년도 원비 기준 월 평균 학부모 부담금 135,000원 이상인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30,000원 한시적 징수 가능

  - ③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준수
  - ④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준수
  - ⑤ 각호의 지원 조건에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조치

● 지원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접수, 신청	사립유치원	● 사립유치원에서 대상자 선정 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비 신청
↓		
대상자 확인, 예산 신청	교육지원청	● 유치원별 소요예산 취합 후 도교육청으로 신청
↓		
예산액 확인, 교부	도교육청	● 신청예산 확인 후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예산 재배정
↓		
교육비 지원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으로 예산 교부
↓		
예산편성, 집행	사립유치원	● K-에듀파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산서 제출

-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지도·점검단 구성·운영
  - 교육지원청 점검 시 합동 점검 실시
-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지도·점검단 구성

주요 점검 항목

- 유치원 입학·퇴학, 출결 관리 현황
-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지원금 신청, 정산관리 현황
- 집행의 적절성 여부(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
- 교육과정 무상교육비 외 방과후 과정 등의 학부모부담 징수금 일체에 대한 인상 상한율 준수 여부
- 방과후 과정 학부모부담 징수금 결정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실시 여부
- 유아 허위 등록 여부(지원금 확인, 집중 검토)
- 기타 무상교육 지원금 운영에 관한 의견 등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주무관 장원진

전화번호

063) 270-6123



### ● 추진 목적

-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통한 원비 안정화 실현

###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 ● 추진 방향

-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에 기여한 유치원에 지원
  -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에 참여한 유치원에 지원
  - 전년대비 원비 인하, 동결 또는 원비 인상 상한율(2.7%)을 준수한 유치원에 지원

### ● 추진 내용

-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추진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에 의한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추진
-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 지속 추진
  - 유치원 원비의 인상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함 「유아교육법」 제25조 (유치원 원비)
  - 2023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22.10.5.)
  -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률: 2.7%(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의 2.7% 이내로 원비 인상 가능)
  - 유치원 원비 동결 및 지원 기준
    - 입학금, 교육과정비 간의 비용 이동은 가능하고 전년대비 원비 총액의 2.7% 이내 인상까지 동결로 인정하여 학급운영비 지원
    - 단, 유아 수가 학급편성 최소 인원(도시지역 기준 5명) 이하인 유치원은 지원 제외
    - ※ 기준: 2022년 유치원비(2023년 유치원비를 인하여 위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포함)
- 학급운영비 지원 방안
  - 무상교육 참여 유치원: 학급당 월 510천원 지원
  - 무상교육 미참여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률 준수한 유치원에 학급당 월 510천원 지원
  - 학부모부담 원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액 원비 유치원은 유치원비 동결 시에도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 \* 고액 원비 유치원: 전복 학부모부담 평균 원비의 2배 초과 유치원

● 위반 사실 적발 시 조치

-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행정상 착오 등은 현장 조치하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치
  -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기지급한 지원금 반환 및 재정 차등 지원 등 조치
  - 각종 지원금 회수 및 각종 지원 사업 대상에서 후 순위
  - 행정처리 절차에 의거 유아모집 정지, 학급 감축 등
- ※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8조 및 제30조

주요 위반 사례

- 3월 초 유치원비 안정화 정책에 협조하고, 추후에 인상하는 경우
- 유치원비 인상 상한율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 유치원비 징수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유치원비 징수내역 보고 자료와 학부모 공지 내용이 다른 경우
- 정보공시시스템 및 유치원 누리집에 유치원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보고한 유치원비 이외의 별도 항목을 만들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4-5

##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 추진 목적

- 공·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학습권 보장

### 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

### 추진 내용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



#### 유치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 지원

- 지원대상: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
- 지원내용: 유아학비 등 지원을 통한 지원방식 일원화
  - 무상교육 희망 유치원: 유아학비(교육과정+방과후 과정) + 무상교육비
  - 무상교육 미희망 유치원: 유아학비(교육과정+방과후 과정) + 의무교육비\* 차액분

\* 381천원/월(당초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 280천원/월(유아학비 교육과정비)

-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 차액분은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특수팀)에 신청

-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 등 지원 내용 -

(단위: 천원)

무상 교육 희망 여부	특수교육대상유아								
	기본(일반유아 동일)				차액분(특수팀 지원)			학부모 부담	계
	유아학비 (교육과정)	무상 교육비	유아학비 (방과후비)	소계	방과후비	의무교육비 (차액분)	소계		
희망	280	135	70	485	30*	0	30	0	515
미희망	280	0	70	350	30*	101**	131	0	481

\* 방과후 운영비: 30천원/월\* 이내 실비 추가 지원

▪ 100천원/월(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지원비) - 70천원/월(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 381천원/월(당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 280천원/월(유아학비 교육과정비)

● 특수교육대상 유아 치료지원비 전자카드(꿈활짝카드)지원

- 지원대상: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지원내용

■ 월 17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치료지원 평가통지서 영역에 맞는 치료영역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영역과 동일영역 지원 불가함

※ 치료 신청 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미술·음악, 심리운동, 감각통합)

●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중

■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유아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유아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 지원내용

■ 대중교통비, 시내버스비 기준으로 1일 2회 지원

※ 통학버스 이용의 경우 및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및 의무교육비 지원 유아 중복신청 불가함

● 특수교육대상 유아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

-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 유아 중 방과후 과정 신청자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유아학비(방과후비 포함)와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방과후 운영비: 30천원/월\* 내 실비 추가 지원 가능

\* 100천원/월(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지원비) - 70천원/월(유아학비 방과후 과정)

유의 및 주의 사항

- ①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교육비, 치료지원, 통학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초등학교 취학유예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취학 독려
- ② 유아학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람
- ③ 공·사립 유치원이 아닌 기관(어린이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담당자

주무관 박진형

전화번호

(063) 270-6066

**추진 목적**

-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선발을 통해 유치원의 공정성 확보
-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한 학부모 불편 해소 및 교원 업무경감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11조, 제19조의2
-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추진 내용**

- 대상: 공·사립유치원
- 모집 시기: 2023. 11월
- 모집 방법: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활용
- 지원 횟수: 신입생 3회 지원 가능(재원생은 타 유치원에 2회 지원 가능)

구분		2024학년도 유아모집	
우선 모집	추첨 방식	희망 순 추첨방식	
	선발 순위	최우선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모집인원 100% 반영)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자녀(모집인원 3% 반영)
		3순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가정 자녀(모집인원 3% 반영)
		4순위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자녀(모집인원 50% 반영) -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2명 이상) 자녀, 장애부모 가정 자녀, 건강 취약 유아, 쌍생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자녀
5순위	유치원장 자율 결정(모집인원 40% 이내 반영)		
일반 모집	추첨 방식	희망 순(중복선발제한) 추첨방식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윤세은

전화번호

063) 270-6126



### 추진 목적

-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게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성장과 발달 지원
- 유아의 유치원 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인 어려움 예방 및 치유 지원
- 유아의 발달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 2023 주요업무계획(전북교육 2023-001)

### 추진 내용

- 기간: 2023. 3. ~ 2023. 11.
- 대상: 공·사립유치원 유아 중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유아
- 지원내용: 심리·정서 상담 등 지원

### 기대효과

-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하는 체제 구축으로 유아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
- 유아의 긍정적 정서·행동 지원을 통한 자기 회복력 증진
- 유아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 도모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담당자

장학사 구정은

전화번호

063) 270-6121



### 추진 목적

- 유치원 유아의 적정배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 추진 근거

- 유아교육법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 추진 방향

- 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 유치원 학급당 최대 유아 수 적정화 유지

### 추진 내용

-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적정화로 교실 수업 개선

(단위: 명)

구분	정원 기준			최소인원 기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지역	최소 유아 수	
		정원	허용			
만3세반	14	14	16(+2)	시(동)	5	
만4세반	18	18	20(+2)	농어촌	읍	4
만5세반	20	20	25(+2)		면	4
만3~4세반	16	16	18		벽지	4
만4~5세반	18	18	24		도서지역	3
만3~5세반	16	16	18			

※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에 따르되 2017년에 마련된 최대 유아 수 기준을 허용하고, 연령별 최대 2명, 총 6명까지 기준 초과 학급 편성 가능

※ 면·벽지·도서 지역은 기준 인원 미만의 경우도 주변 유아교육 여건(통학 수단의 어려움, 특수유아가 재학 중일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단위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 등)을 검토하여 학급 편성(존치) 여부 결정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

담당자

주무관 김민애

전화번호

063) 270-6075



## 교직원 의무연수 안내

순	교육명	횟수·시간	관련근거 및 교육방법	운영 방법	담당부서
1	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직원 등 : 3년 15시간 이상(2021.3.~2024.2.)</li> <li>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 : 6개월마다 2시간 이상</li> <li>교육활동참여자 : 연간 1회 이상</li> </ul>	원격 집합	
2	부패방지교육 (청렴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li> </ul>	원격 집합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li> </ul>	원격 집합	
4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li> <li>신규 임용자, 교감 및 사무관 승진(예정)자 등은 필수</li> </ul>	원격 집합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8조</li> </ul>	원격 집합	
6 추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교육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교육)</li> <li>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결과 기록·관리</li> </ul>	원격 집합	
7	교권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li> <li>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li> </ul>	원격 집합	
8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 개선)</li> <li>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인식개선교육)</li> <li>대상: 교직원(교육공무원 포함)</li> </ul>	원격 집합	
9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li> <li>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및 신고방법</li> <li>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li> </ul>	원격 집합	
1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연 3시간 이상 (실습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9)</li> <li>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실시일이 다를 경우 최소 4시간)</li> </ul>	원격 집합	
11	성폭력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li> <li>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li> <li>각 교육별 대면(對面)교육 필수</li> </ul>	원격 집합	
12	성희롱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li> <li>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li> <li>각 교육별 대면(對面)교육 필수</li> </ul>	원격 집합	
13	성매매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li> <li>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li> <li>각 교육별 대면(對面)교육 필수</li> </ul>	원격 집합	
14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li> <li>각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교직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이수</li> </ul>	원격 집합	
15	정보보안교육	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li> <li>각 기관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1회 정보보안 교육 실시</li> </ul>	원격 집합	



순	교육명	횟수·시간	관련근거 및 교육방법	운영 방법	담당부서
16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	원격 집합	
17	가정폭력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 각 교육별 대면(對面)교육 필수	원격 집합	
1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원격 집합	
19	자살예방 교육	연 6시간 이상 권장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자살 위기에 대한 상담 방법 등을 교육	원격 집합	
20	인권교육	연 2회 이상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교직원 대상 각종 연수에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편성	원격 집합	
21	다문화이해교육	연 2시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0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원격 집합	
22	통일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 •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	원격 집합	
23	인성교육	연 4시간 이상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인성교육의 개념, 목표와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원연수 계획 수립	원격 집합	
24	소방훈련·교육	연 2회 이상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실시 (단, 합동훈련 제외 대상기관은 자체훈련으로 대체)	집합	
25	사회복지교육	연 4시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 • 사이버교육, 헌혈, 사회봉사활동(지방공무원에 해당)	원격 집합	
26	학교석면 안전교육	연 2회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 교육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집합교육 실시(석면 보유학교)	집합	
27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교육	연 1회	• 설비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해당 학교)	원격 집합	
28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 대상: 교육공무직원	원격 집합	
29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 대상: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원격 집합	
30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연 2회 이상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및 3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격 집합	

※ 교직원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원격연수로 개설(전북교육연수원)하여 운영

※ 이외 의무연수가 있을 시 해당 업무 부서에서 안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2023**  
**전주유아교육계획**

---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처: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